



디지털금융 환경변화와 과제

2022

한국금융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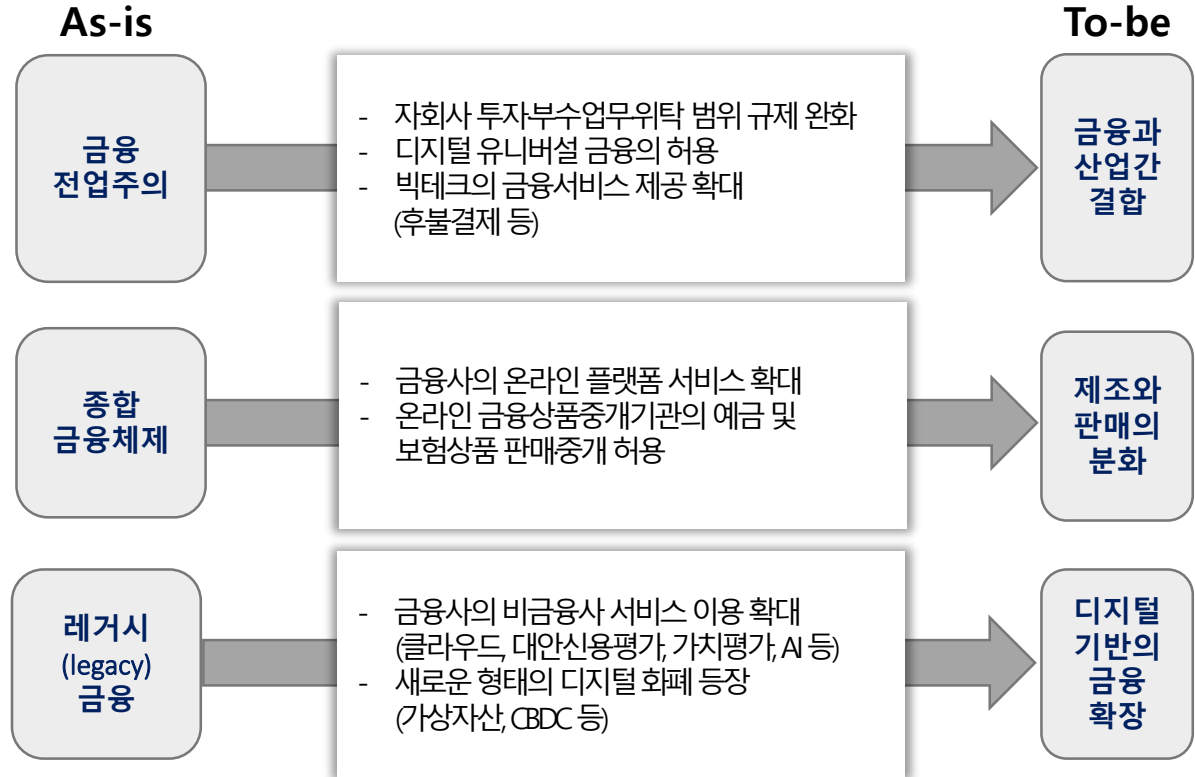
 **목차**

- 01 디지털 금융의 환경 변화
- 02 디지털 금융의 주요 이슈
- 03 디지털 금융의 과제
- 04 참고

01

디지털 금융의 환경변화

- 2023년에도 금융과 산업의 결합,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 분리, 디지털 기반의 금융 확장이 가속화 될 전망



01

디지털 금융의 환경변화

<참고>



금융과 산업간 결합

- 음식배달, 가상자산, 부동산 등 비금융서비스로의 투자 증가
- 은행, 증권, 보험 등 계열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슈퍼앱 경쟁 및 관계회사간 정보 공유 활성화

금융상품의제작과판매분리

-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예적금 및 보험, P2P상품까지 비교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검토
-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중심으로 적은 비용으로 금융상품 유통 가능한 플랫폼 의존도가 커질 것

디지털금융

-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확대 추진 중 (2022년 말 492개 정보항목 -> 720개로 증가)
-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서비스의 도입



02

디지털 금융의 이슈

● 위험과 기회요인이 공존

⊖ 위험

- 플랫폼 경쟁 심화 및 마진 축소 (금융회사 vs 금융회사, 금융회사 vs 빅테크)
- 금융회사 업무 위탁 양상 변화로 기술기업 의존도 증가 (핵심업무의 외부 업무 위탁 증대)
- 빅테크의 중개플랫폼 진출로 인한 금융회사의 시장지배력 약화 (자체 플랫폼 경쟁력 약화)

⊕ 기회

- 마이데이터 관련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실시간 정보와 연계된 맞춤형 서비스 확대
- <디지털 자산 기본법> 등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에 따른 관련 서비스 진출 또는 협업 확대 가능성
- 신탁업 제도 개선에 따른 취급 재산범위 확대로 유언대용신탁 등 은행의 서비스 기회 확대 전망

03

디지털 금융의 과제



How?

● 디지털 생태계로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

-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 공동개발 및 활용 확대
- 부수업무위탁 확대를 통한 생태계 구축

● 자사 플랫폼의 對고객 기반 강화

- 간편결제 등 지급모델 (Payment model) 을 활용한 활성고객 기반의 확장
- 부수업무(배달서비스 등)를 활용한 잠재고객의 확보
- 자체적인 핀테크 기술력 확보를 위한 R&D협업 강화 및 M&A 활용

● 온라인 판매·중개 플랫폼의 전략적 활용

- 기존 채널과의 내부 경쟁과 구축효과 (crowding out) 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전략의 마련
- 플랫폼 수요층 대상의 맞춤형 상품 개발 (모기지, 신용대출, 오토론 등)

04



☐ 참고

4-1. 금융 샌드박스

4-2. 오픈 플랫폼 판매 중개

4-3. 디지털 자산 감독 현황

4-4. CBDC 도입 및 현황

04

참고

4-1

금융 샌드박스

●(추진 현황)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, 내년 기간 종료 예정

- ① 기존의 규제환경에서는 허용되지 않거나, ②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, ③ 어떠한 규제가 적용될 지 불분명한, 새로운 상품이나 거래방식을 시장참가자들이 완화된 규제환경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

- 도입 첫 해 다수의 금융혁신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해마다 감소

●(향후 과제) 본업과 직결된 혁신 사업 발굴과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

- 본업과 직결된 혁신 사업 발굴과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으로 최신기술 적극활용

업권별 승인 추이 (유사 사례 제외)

	2019	2020	2021	2022년 1~9월
은행	6	6	2	2
보험	2	4	1	0
금융투자회사	8	5	0	2
카드	12	4	2	1
핀테크	30	12	4	0
빅테크	0	4	1	1
공공기관등기타	8	8	2	0
전체	66	43	12	6

자료: 규제정보포털, 국민의 힘 유의동 의원실 자료 참고
주: 복수 업권 참여 시 중복 기재

04

참고

4-2

오픈 플랫폼 판매 중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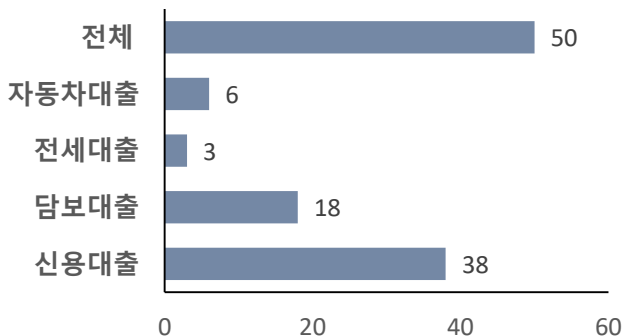
● (추진 현황)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의 판매 증대 확대

- 제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예적금 및 보험, 온라인투자연계금융(P2P) 상품까지 비교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검토
-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
- 기존의 1사 전속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출모집인 방식보다 적은 비용으로 금융상품 유통가능

● (향후 과제) 플랫폼 시장지배력 확대에 따른 불공정경쟁 문제 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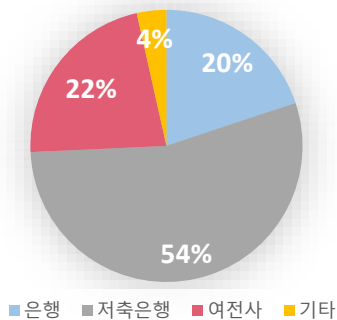
- 플랫폼 시장지배력은 소비자 및 연계된 금융기관에 비용이 전가될 수 있어 모니터링
- 금융상품 제공과정에서 이해상충 소지 및 불공정경쟁 행위가 있는지 감시 필요

온라인 대출모집법인 취급상품



자료: 코스콤 이해상충방지 심사 통과 50개사 취급 대출상품 (중복 허가된 법인도 존재)

대출 플랫폼 제휴 금융사 현황



자료: 자본시장연구원 (2021)에서 재구성

04

참고

43

디지털 자산 감독 현황

●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중

- '디지털 자산은 암호화폐, NFT, 토큰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현재 특금법상 암호화폐만 **가상자산***으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음.
*특금법 제2조 제3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
- 디지털자산 기본법 또는 가상자산업법 등 관련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정비하여 투자자보호,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노력중
*증권형 토큰의 경우 4분기 중 「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」 마련 예정 (금융위)
- 디지털 자산의 성격상 국경간 제공이 용이하고 국제적인 규제방향과의 정합성도 중요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규제를 정비할 필요

04

참고

44

CBDC 도입 및 현황



● (추진 현황) 최근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, 주요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 도입 논의 및 실험이 진행중

- 2016년부터 스웨덴(소매용), 캐나다 및 싱가포르(도매용)에서 CBDC 관련 프로젝트 및 모의 실험 진행
- 2020년 바하마, 2021년 동카리브해 통화동맹지역 등 소규모 국가에서 실제 CBDC를 도입·사용중
- 중국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15개 시·성에서 e-CNY 시범사업 진행
-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금년 9월 CBDC 관련 보고서를 발표
- 우리나라도 2021년 CBDC 기본기능을 점검하는 1단계 모의실험을 마치고, 현재 다양한 추가기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2단계 모의실험 진행

● (향후 과제) CBDC가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민간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한편,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할 필요

- CBDC가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복원력을 유지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기능하면서, 민간 디지털 지급수단의 혁신성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할 필요
- 익명성 정도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어디까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설계시 고려
- 향후 국경간 거래에서도 CBDC가 이용 가능하도록 국제 공조 및 협력도 강화
- 은행권의 자금조달비용 상승과 금융중개기능 약화 등 잠재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
- CBDC가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거래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장치 마련

감사합니다.

2022년 | 한국금융연구원